

정관 변경 신·구 대비표

현 행 (구)	개 정 (신)
<p>제1조 (목적) 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<u>육수학(호소, 하천, 지하수, 온천 등 내륙에 있는 수체에 관한 학술 연구)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 (목적) 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<u>기여</u>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<u>하천, 호소, 하구 및 연안 등을 대상으로 물리·화학적 환경 및 서식 생물체를 포괄하는 수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학술 연구와</u>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(명칭) 본 학회는 사단법인 <u>한국하천호수학회(이하 본 회라 한다)</u>라 칭하고 영문으로 “The Korean Society of Limnology”라 칭한다.</p>	<p>제2조 (명칭) 본 학회는 사단법인 <u>한국수생태학회(이하 본회라 한다)</u>라 하고, 영문으로 “The Korean Society of Limnology (KSL)”라 칭한다.</p>
<p>제5조 (회원자격) 본 회의 회원은 <u>육수학 및 이에</u> 연관된 학문을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</p>	<p>제5조 (회원자격) 본회의 회원은 <u>하천, 호소, 하구 및 연안 등을 대상으로 수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한 연구 및 이와</u> 연관된 학문을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전공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.</p>
<p>제40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<u>이를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</u>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40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<u>본 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</u> 한다.</p>